

용인시 공무원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11. 11. 3 조례 제1169호
일부개정 2018. 5. 14 조례 제1795호
일부개정 2019. 5. 9 조례 제1920호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근로자 자녀의 학자금 대여에 대하여 융자금이나 이자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 5. 14, 2019. 5. 9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무원근로자”란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민간인 근로자를 말한다. 다만 청원 경찰은 제외한다. <개정 2018. 5. 14, 2019. 5. 9>

제3조(융자기관) 공무원근로자(이하 “근로자”라 한다) 자녀의 학자금(이하 “학자금”이라 한다) 융자기관은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과 학자금 융자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(이하 “융자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<개정 2018. 5. 14, 2019. 5. 9>

제4조(융자추천 및 대상) ① 시장은 융자기관에 근로자가 자녀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.

② 추천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, 대학(대학교를 포함한다)이나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8. 5. 14, 2019. 5. 9>

제5조(융자추천 제한대상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융자기관에서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다. <개정 2019. 5. 9>

1. 등록금(입학금·수업료를 포함한다) 전액 면제자
2.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
3. 부부가 근로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 융자
4. 방송통신대학 및 제4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의 대학생

5.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제6조(융자추천 횟수 제한) 근로자 자녀 1인당 학자금융자 추천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.

1. 2년제 대학 : 4회
2. 3년제 대학 : 6회
3. 4년제 대학 : 8회
4. 6년제 대학 : 12회

제7조(융자금액 및 융자한도) ① 근로자가 융자기관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. <개정 2018. 5. 14>

② 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퇴직금의 2분의 1 초과 시 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.

제8조(융자 및 상환) ① 융자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융자하고 그 학자금 원금은 융자대상자가 상환하여야 하며, 그 이자는 융자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시장이 지급하고 학자금 원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은 융자대상자가 부담한다.

② 시장은 학자금 융자이자 보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지급토록 한다.

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이나 이율에 대하여는 시장과 융자기관 간의 학자금 융자협약에 따른다.

④ 융자금의 상환은 융자금 수령 후 1년 후부터 36개월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. 다만 36개월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5. 14>

제9조(지원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융자기관에 통지

하여야 하며,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지원 취소자는 기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5. 9>

1. 융자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퇴직한 경우
2.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학교 중퇴 또는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. 다만 군입대 또는 질병에 의해 2년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휴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3. 학자금 지원신청서의 허위 기재 등 학자금 지원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4. 제5조 각 호에 따른 융자추천 제한대상자가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
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회계법」 및 「용인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8. 5. 14]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 등)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학자금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,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에 여입한다.

부칙 <2018. 5. 14 조례 제179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5. 9 조례 제192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